

「구미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정지원 의원 외 11명

2. 제안이유

-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5조의 2에 의하여 구미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청소년 의견수렴과 참여를 촉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조례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4조~제9조)
-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)
- 포상 및 위탁에 관한 사항(안 제12조~제13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5조의2, 「청소년 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의2
-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- 기 타: 해당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청소년들의 제안이 정책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여 청소년의 자치권 및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청소년 의견수렴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5조의 2,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조문에 의하여 정책과정에 청소년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참여를 촉진토록 되었음.
- 이와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서울 등 118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였으며, 경기도에서도 4개 시군에서 조례가 제정되었음.
- 청소년들의 제안이 정책에 반영되고, 타지자체 위원회와의 교류 및 업무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은 청소년의 역량개발 및 민주시민 육성 도모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적절하다 생각됨.